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윤은희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3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중·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저가 시공에 의한 부실건설 및 안전사고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10년 10월 6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소

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2조의 2)

-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2조의 3)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